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0. 20. 권영숙 의원 외 5 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0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20. 10. 2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

1) 제안이유

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폭염 빈도 및 폭염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폭염저감시설의 종류 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(안 제4조~안 제5조)
- 라.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(안 제6조~안 제7조)
- 마. 무더위쉼터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바.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사. 재난도우미 운영 (안 제10조)

아. 협력체계 구축 및 폭염 피해 예방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11조~안 제12조)

3. 검토의견(신준호 전문위원)

1) 조례 제정 배경

-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라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여 폭염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2)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3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“폭염”과 “폭염특보” 등의 용어를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상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적용함.
- 안 제3조 폭염저감시설의 종류는 검증 가능한 시설들로 규정하여 효과성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‘폭염대비 종합계획’을 수립하여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,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등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는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폭염취약계층에게 각종 냉방물품

을 지원하고 밀착 보호관리를 위한 통장,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가용 가능한 인원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방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계	생활지원사	밀반찬·도시락 배달봉사자	서울재가관리사	방문간호사
349명	110명	204명	3명	32명

<표 1. 재난도우미 활용 인력 현황>

3)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매년 거듭되는 기록적인 ‘폭염’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그동안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 있어
-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9월 18일 법령의 개정을 통해 ‘폭염’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.
- 금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폭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.
- 참고로 지난 2018년도에는 1973년 이후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하여 서울의 일 최고기온이 39.6℃의 최고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, 이로 인해 온열질환 신고환자수가 4,526명으로 역대 최다로 발생하였음.

※ 폭염일수(일 최고기온 33℃ 이상) 31.4일(평년 9.8일)

※ 열대야일수(밤(18:01~익일09:00) 최저기온이 25℃이상) 17.7일(평년 5.1일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